

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423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01. 6. .

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이유

- 석유사업법시행령 개정(2000.12.29)으로 제34조(권한의 위임·위탁 등)제1항 제1호가 신설 되어 부생연료유판매업 등록업무가 도지사에 권한 위임(2001.7.1시행)됨에 따라
- 석유판매업(부생연료유판매소)등록시 수수료 징수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.

2. 주요골자

- 석유판매업(부생연료유판매소) 등록신청 수수료 신설
- 부생연료유판매소 등록신청 : 1건당 20,000원

3. 근거법령 : 별첨

- 첨 부 : 1.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
2. 신규조문대비표
3. 관계법령발췌

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2의 제2호 나목중 세목(3)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구 분	기 준	요 액
2. 인가, 허가, 신고, 신청, 등록 시설확인 등 나. 상공 및 동력자원 관계 (3) 석유판매업(부생연료유판매소) 등록신청	1건	20,000

부 칙

이 조례는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		개 정 안		
[별표2] 제 증 명 등 수 수 요 율 표 (단위:원)			[별표2] 제 증 명 등 수 수 요 율 표 (단위:원)		
구 분	기 준	요 액	구 분	기 준	요 액
2. 인가, 허가, 신고, 신청, 등록 시설확인 등 가. (생략) 나. 상공 및 동력 자원 관계 (1) (생략) (2) (생략) (3) (신설)			2. 인가, 허가, 신고, 신청 등록 시설확인 등 가. (현행과 같음) 나. (1) (현행과 같음) (2) (현행과 같음) (3) <u>석유판매업(부생연 료유판매소)등록 신청</u>	1건	<u>20,000</u>

관 계 법 령 발 취

□ 지방자치법

제15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□ 석유사업법

제9조(석유판매업의 등록 등) ① 석유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·광역시장 또는 도지사(이하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에게 등록을 하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. 다만, 부산물인 석유제품의 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.

② ~ ④ 생략

제31조(수수료) ① 제9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판매업(부산물인 석유제품판매업을 제외한다)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

제32조(권한의 위임·위탁)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시·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.

② 생략

□ 석유사업법시행령

제34조(권한의 위임·위탁 등)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·도지사에게 위임한다. 다만, 시·도지사는 제 6호의 업무를 석유제품의 품질검사를 목적으로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(이하“검사소”라 한다)에게 그 업무를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를 처리할 수 있다.

1. 법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부산물인 석유제품의 판매업의 등록에 관한 권한중 부생연료유판매소의 등록에 관한 권한 (2001. 7. 1 시행)

② - ⑤ 생략